

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(변경)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20일
------	-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(전화번호:)

항만개발 사업실시 계획	항만명						
	사업 종류						
	사업 명칭						
	사업 장소						
	사업 목적						
	사업 규모	시설					
		규모					
	시설이용계획						
	사업 기간	~ (일간)					
	사업 방법						
	그 밖의 사항						

항만시설 사용	사용 시설	명칭										
		수량										
		위치										
	사용 목적											
	사용 기간	~		(		일간)						

「항만법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시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<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>

1.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
2. 향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
3. 자금계획서(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)
4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,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(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5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(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6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(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)
7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,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(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)
8. 향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(법 제45조에 따라 향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합니다)의 사용·수익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(향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)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향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

<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>

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처리절차